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931호

「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」(예규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(시행 '24.8.21.)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인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가 전 사전확인 절차 신설 및 설립인가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폐지에 따라 예비인가의 신청사실 공고 및 의견수렴, 심사사항 삭제(안 제10조, 제11조)
- 나.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폐지에 따라 자구 수정 및 인용조문 변경(안 제2조, 제3조, 제14조, 제20조의2)

다.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전 사전확인 신설에 따른 접수, 확인결과 통보
방법 규정(안 제9조, 제12조, 별표2, 별지6호 서식)

라.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신청접수, 공고 및 심사 절차 신설(안 제13조,
제13조의2, 제13조의3, 별지7호 서식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부동산투자제도
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/> 정책자료 /
법령정보 /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(우편번호 30103)

☎ 044-201-3417, 4812 Fax 044-201-5538